

● 환경부 공고 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 세부 사항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확인(안 제1조의2)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승인 사항 규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사항과 신청 서식,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을 규정함.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7조의2)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 해당 정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라.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및 승인포기 신청(안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중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를 삭제하고, 신고 후 승인 포기 의사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 및 자료 보완(안 제15조 및 제16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대표자 선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후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제출 자료 목록을 정비함.

바. 긴급 상황 시 한시적 승인 면제의 방법(안 제24조제6항부터 제1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와 해당 살생물제품의 성분, 대체품의 요건 등을 포함해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이를 검토하며,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 면제를 취소할 수 있고, 승인이 면제된 제품은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사. 포장·광고 시 신고·승인 내용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 사용 제한(안 제34조 등)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도 신고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살생물물질 사용에 따른 효과·효능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의 내용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구로 추가함.

야.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안 제36조의2)

법 제36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승인 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조·보관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

자. 시험·검사기관 평가 기준을 보완(안 제40조)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차.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보완(안 제43조)

변경신고 등 법 개정사항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유통제품 조사 등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카. 보고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사유 변경(안 제46조)

정기 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로 변경함.

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및 신고 절차(안 제50조)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가진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하고,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를 위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용제외를 위한 확인) ①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 제외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10조제6항부터 제8항 또는 법 제3장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적용 제외 확인 결과 통보서

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을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7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 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완에”를 “수정 또는 보완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 한

정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인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2. 수탁자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3. 제품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안전기준 해당 물질, 제형 및 용도가 변경되는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품 정보를 말한다)

⑨ 영 제5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4항의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3항) 중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4항) 중 “영 제6조제3항”을 “영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된 기능을 하는 원료물질(이하 주원료라 한다)과 그 배합비율 및 용도를 변경하는 등 각 호의 변경사항이 새로운 승인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제품의 명칭, 제형, 중량·용량·매수 등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경우
3. 주원료를 제외한 원료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주원료의 제조원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주원료와 해당 제품의 유해성 및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 등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6. 원료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결과 또는 그 시험·검사의 기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7. 해당 제품의 용법·용량, 폭발·화재·노출 시 응급조치 사항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8. 해당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유해성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 한정한다) 및 연락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단순 오기가 명백하여 정정하는 경우 등 단순한 작성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⑥ 영 제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통지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6항제3호”를 “법 제10조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6항제8호”를 “법 제10조제8항제8호”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후단 중 “보완”을 “수정 또는 보완”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승인신청서”를 “변경승인 신청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물질승인을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 포기의 의사를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인 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유예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 중에서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살생물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 우선 선정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자료”를 “물질승인 신청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등록”을 “승인”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선정일 이후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2항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2항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제1호의 “제7호의 자료”를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호 나목·다목(위해성 정보에 한정한다)·라목의 자료, 같은 조 제7호의 자료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유형이 모두 같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둘 이상의 자에게만 적용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사용승인의 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후단 중 “보완”을 “수정 또는 보완”으로,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보완”을 “수정 또는 보완”으로 한다.

제24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특정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 유형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효과·효능
3.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공중보건 등 긴급히 필요한 사유
5.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6.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대체하기 위한 제품의 요건에 관한 자료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 요청을 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에 제6항의 긴급히 필요한 사유에 대한 효과·효능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제품이 있다면 사용목적 및 용도 이외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5항의 위해성평가를 위해 해당 제품의 시료, 노출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6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허용하였다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살생물제품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3. 해당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⑪ 이 조에 따라 승인 면제를 받은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제25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5조제5항의 신고증명서, 제6조제8항의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의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보관 시설 기준

- 가. 제조작업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제품 및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출 것

- 나. 제품의 제조공정 또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시설 또는 기구를 갖출 것

2. 안전관리 등 기준

- 가. 제품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수행할 인력을 갖출 것

- 나.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품제조, 제품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 다. 제품의 제조·보관과정에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
· 수입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1호 중 “신고 자료”를 “신고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법 제4장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
른 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
우를 말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승계한 권
리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따른
것이면 국립환경과학원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따른 것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 ②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3. 선임된 자가 법 제54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갈음하여 수행하는 국내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등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자 및 제2항제3호의 국내 수입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 또는 해임된 자 및 제2항제3호의 국내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및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8조서식의 ‘신청인’을 ‘신청인(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3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를 위한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품질관리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36조의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 관련)

승인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법 제36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보관시설 기준

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 및 보관 시설을 운영·유지해야 한다.

- 1) 오염 및 교차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작업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기시설 등을 갖추는 것
- 2)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 3) 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시설의 경우 천장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되어 있으며, 천장·바닥·벽의 표면은 소독액을 이용한 세척에 견딜 수 있을 것
- 4) 작업대 및 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멸균시설(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5)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은 적절한 온도 및 습도 등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 6)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이 있을 것
- 7)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자재 또는 제품은 구획하여 보관할 것
- 8) 폭발 또는 발화의 우려가 있는 제품의 보관시설은 따로 분리되어 있을 것
- 9) 폐수 또는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설비 및 기구를 갖추는 것

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를 갖추어 운영·유지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시험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1)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및 시설, 기구를 갖춘 것
- 2) 미생물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구획되어 있을 것
- 3) 시험실에 관련된 문서, 시약 및 안정성 시험용 검체를 보관할 수 있는 구획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안전관리 등의 기준

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고 제품의 제조·보관 과정에서의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기준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1) 제조부서와 독립된 품질부서를 두고, 각각 제품 제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다만, 전품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 2) 제조부서의 책임자
 - 가) 제품 제조관리를 위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보존하고, 이에 따라 제품제조를 관리할 것
 - 나) 원료, 자재 및 완제품의 보관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 3) 품질관리부서의 책임자
 - 가)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보존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것
 - 나) 시험지시서에 따라 제품을 시험·검사하고, 시험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조사, 기록할 것
 - 다) 시험성적서 및 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제품의 출고를 승인할 것

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문서 관리기준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1)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할 것. 이 문서에서 제품승인과 관련된 부분은 승인받은

내용과 일치할 것

- 2) 모든 기준서 및 문서기록은 개정 및 수정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기록의 보존기관 등을 설정하여 보관·관리할 것
- 3) 제품 제조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만료 후 10년까지로 하되 법률 등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보존할 것
- 4) 제품표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될 것
 - 가) 제품명, 제형 및 성상
 - 나) 승인 연월일 및 승인사항 변경 연월일
 - 다) 효과·효능,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라) 승인받은 원료약품 및 그 분량과 제조단위당 기준량
 - 마) 제조공정흐름도 및 상세한 공정별 제조방법과 공정검사 항목 및 방법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공정의 범위를 포함한다)
 - 바) 상세한 제조방법 및 작업 중 주의할 사항
 - 사) 원료, 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아)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 자) 중요공정의 수율관리기준
 - 차) 보관조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 카) 제품 및 제품표준서의 이력 관리
- 5) 제조관리지시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제조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
 - 나) 공정검사 방법, 특히 칭량과 멸균작업 등 중요 공정의 이중 점검 방법
 - 다)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 방법
 - 라) 시설 및 기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원료, 자재 및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위탁제조인 경우 그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 6)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작업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 조치 방법
 - 나) 작업자의 수세, 소독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 다)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

- 라) 작업실 등의 청소에 사용하는 약품 및 기구
 - 마)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 바)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 주기
- 7)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시험항목 및 시험 기준 등이 포함된 시험지시서
 - 나) 검체의 채취자, 채취량, 채취장소, 채취방법 및 채취 시 주의사항(무균 여부 등)과 채취 시의 오염방지 대책
 - 다) 시험시설 및 기구의 점검
 - 라) 안정성 시험
 - 마) 원료 및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
 - 바) 표준품 및 시약 등의 관리 및 취급요령
 - 사) 위탁시험 또는 위탁제조하는 경우 검체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 판정방법

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제조 및 보관시설에서 작업자 및 방문자의 위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1) 작업자는 물론 방문자도 작업소에 들어갈 때는 청정등급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작업복, 신발,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
- 2) 작업자에게 수세 및 소독방법, 작업복 착용규정 등 위생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할 것
- 3) 신입 작업자 및 재직 작업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것
- 4) 작업소는 오염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할 것
- 5) 작업소는 청소방법, 청소주기,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청소할 것
- 6) 제품 작업소 및 보관소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을 것
- 7) 제조설비의 세척은 세척한 사람, 세척날짜, 세척제 등을 기재한 세척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것(이 경우 세척기록은 그 제조설비의 사용기록과 통합할 수 있다)
- 8) 세척한 제조설비는 다음 사용할 때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세척 후 오래되기 전에 사용할 것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살생물물질 승인 [] 적용 제외 확인신청서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표시기준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
|----------|----------------|-----------|--------------------------|--------------------------------|-------------------|
| | | | | 14일 이내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 소재지(사업장)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신청사항 |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 자료보호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제품(살생물물질)명 | | | 신청여부 | |
| | 제품 고유번호(모델명 등) | | |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 |
| | 제품(품목)유형 | | | 제형 | |
| | 상세용도 | | | | |
| | 수입(수출국) | | |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중량·용량·매수 등) | |
| |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 | | 금회 제조(수입)량(중량·용량·매수 등) | |
| | 적용 제외 사유 | | | | |
| 수탁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신청인이 위탁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한자인 경우)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 |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살생물물질 승인 [] 적용 제외 확인결과 통보서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표시기준 [] |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확인번호 | 제 호 | 구분 | [] 제조 [] 수입 |
| 확인결과 | 제품(살생물물질)명 | | |
| | 제품 고유번호(모델명 등) |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 |
| | 제품(품목)유형 | 제형 | |
| | 수입(수출국) |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 |
| | 연간 제조(수입)량(중량·용량·매수 등) | 금회 제조(수입)량(중량·용량·매수 등) | |
| | [] 적용 제외 대상 [] 적용 제외 비대상 | | |
| | 사유 | | |
| <p>「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 제외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직인 </div>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5일 이내 |
| 신고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제조방식 |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개발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기타(제조방식 설명) |
| 신고 대상 제품 | 제조·수입 |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품목 |
| | 제품명 | 용도 |
| | 제형 | 중량·용량·매수 |
| |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
| |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
| | 신고사항(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제5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사항을 신고 합니다.
 제5조제9항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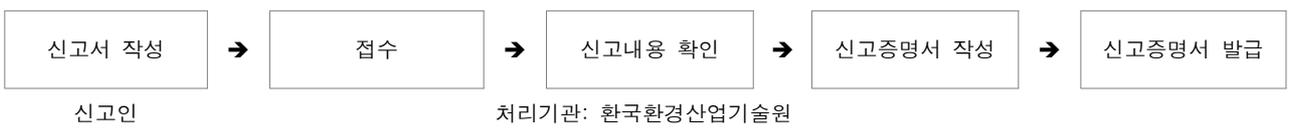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 첨부서류 | <p>1. 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p> <p>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p> <p>다.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p> <p>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p> <p>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p> <p>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1. ①란의 신고인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의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 ②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에는 수탁자 정보를 적습니다.
3. ②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
|------|-------------|-----------------|--------|--|
| 신청사항 |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 |
| | 제품명 | 품목 | | |
| | 제형 | 용도 | | |
| | 원료물질 및 그 분량 | 성상 | | |
| | 제조방법 | 효과·효능 | | |
| | 용법·용량 | 사용상의 주의사항 | | |
| |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료물질,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자료 2. 원료물질의 제조원 및 제품 제조방법 3. 원료물질 및 제품의 유해성, 제품의 효과·효능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 4. 원료물질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시험방법 및 시험검사성적서(기초자료 포함) 5. 용법·용량, 응급조치 사항 및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 6.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유해성 자료 7.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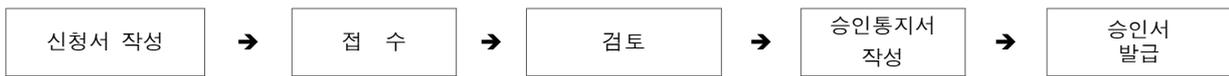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신청정보 | 제품명 | 승인번호 |
| 신고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사항에 대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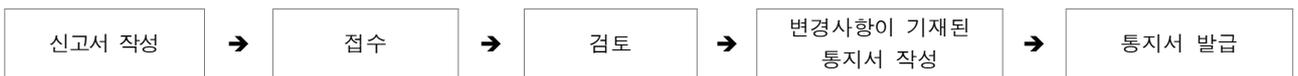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수정 · 보완통지서

| |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input type="checkbox"/> 물질동등성 인정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제품 승인 <input type="checkbox"/>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input type="checkbox"/> 살생물물질 승인 <input type="checkbox"/> 제품승인 특례 <input type="checkbox"/>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input type="checkbox"/> 제품유사성 인정 | |
| 자료제출 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수정 · 보완 사항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7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 환경 과학 원 장

직인

| | | |
|--|----------|--|
| 승인번호 제 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제품명 | 품목 | |
| 제형 | 용도 | |
| 주성분 및 함량 | | |
| 효과·효능 | | |
| 용법·용량 | | |
| 사용상 주의사항 | | |
| 포장단위 | | |
|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 신규승인: 1년 120일(의견제출 및 물질 승인 결정기간 연장시: 1년 180일) 2. 재승인: 10개월(의견제출 및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시: 12개월) | | | |
|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상호(명칭)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성명(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 | 소재지(사업장)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구분 |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 | | |
| | 제출방법 | [] 공동제출 | [] 개별제출 | | | |
| | 신규승인·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 | | |
| 신청정보 | 살생물물질명 | | | | | |
| | 고유번호(CAS No. 등) | | 분자식 | | | |
| | 살생물제품유형 | | 살생물물질 용도 | | | |
| | 제조시설 소재지 | | | | | |
| 재승인 신청정보 | 기존 승인번호 | | 유효기간 | |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라 선임된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 | | | | |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 |
| 공동제출 (대표자) | 대표자 | 상호(명칭)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성명(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 | 소재지(사업장)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구성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연락처 | |
| | | 공동제출 자료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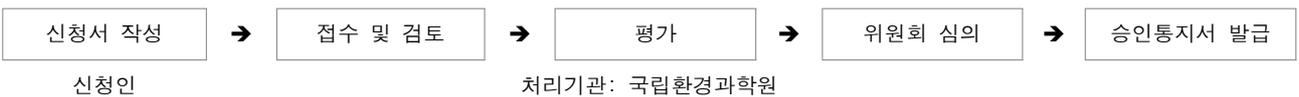
| | | |
|-------------|--|---|
| 첨부서류 | 1.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2.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효과·효능 마. 분류 및 표시 바.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수수료 신규승인: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
| | 3.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다.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마.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사.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승인: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 | |
|------------------------------------|----------|------------------------------|
|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
| 신청사항 | 구분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
| | 승인신청 접수번호 | | |
| | 물질명 또는 제품명 | | |
| | 연장신청일수 (30일 이내) | | |
| |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 사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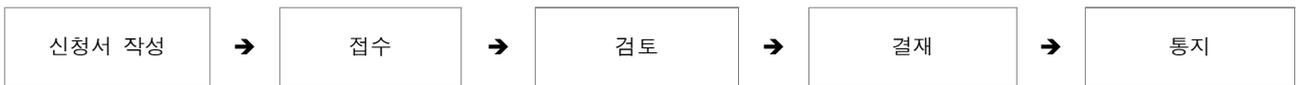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0조제6항 [] 제22조제3항 후단
 []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법 제54조의 2에 따라 선 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변경사항 | 살생물물질명(고유번호) |
| | 순도범위 |
| |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범위 |
| | 사용자범위 |
| | 살생물물질 용도 |
| | 제조시설 소재지 |
| |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

| | | | | |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 | | | |

| | | | | | |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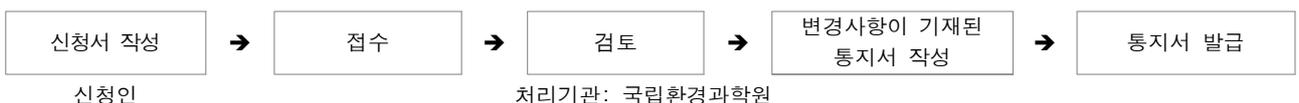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 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4.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물질승인 변경신고서 [] 제품승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 | | |
|------------------------------------|----------|------------------------------|
| 신고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신고사항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 | | | |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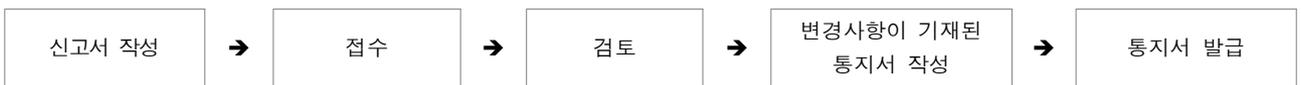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2조제1항
 에 따라 [] 살생물물질 [] 제23조 단서 [] 제23조제1항
 승인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 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4. 살생물물질·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80일(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 | | |
| 신청인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기준 살생물 물질 | 살생물물질명 | | | | |
| | 고유번호(CAS No. 등) | | | | |
| | 승인번호 | 승인 유효기간 | | | |
| | 살생물제품유형 | 제조시설 소재지 | | | |
| 신청정보 | 살생물물질명 | | | | |
| | 고유번호(CAS No. 등) | 분자식 | |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과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 수수료 50,000원 (총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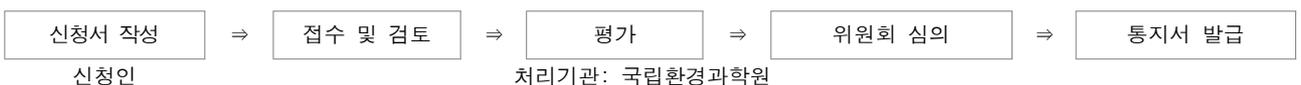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
| 신고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신고사항 | 기존살생물물질명 | | | | |
| | 고유번호(CAS No. 등) | 순도(%) | | | |
| | 살생물제 품유형 | | | | |
| | 화학적 조성 | | | | |
| | 제조(수입)량 상세 용도 | | |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 | | |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 제조 [] 수입 하려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 설>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제출사항 |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 제조 및 수입 | |
|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의물질명 | |
| | 고유번호(CAS No. 등) | |
| | 살생물제 품유형 | |
| | 기존살생물의물질 접수번호 | |
|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 | 물질승인 신청 예정일 |

| | | | | |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 | | | |

| | | | | | |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관한 서류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3. 살생물의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
| 신청인 (법 제54조 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신청사항 | 기존살생물물질명 | | | | |
| | 고유번호(CAS No. 등) | 살생물제 품유형 | | | |
| | 화학적 조성 | | | | |
| | 제조(수입)량 | | | | |
| 상세 용도 | | | | | |
| 개별제출 사유 | <input type="checkbox"/> 영업비밀 공개로 상당한 손실 발생 <input type="checkbox"/> 개별제출로 비용절감 가능 <input type="checkbox"/> 분류 및 표시 상이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자료 선택에 대한 이견 | | | | |
| 구체적 사유 | | | | | |
| 개별제출 자료의 범위 | | | |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수입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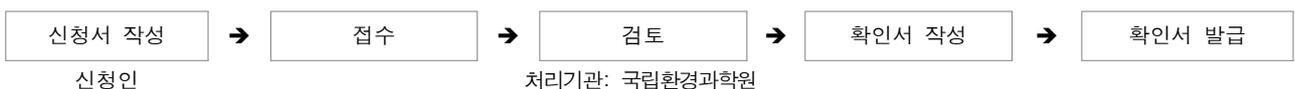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3.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 설>

사용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요청자료 | ① 살생물물질명 | | |
| | 고유번호 (CAS No. 등) | | |
| | ② 신청자료 명칭 | | |
| | ③ 신청자료 사용용도 | | |
| | 신청자료의 사용 단위 | [] 개별 사업자 [] 협의회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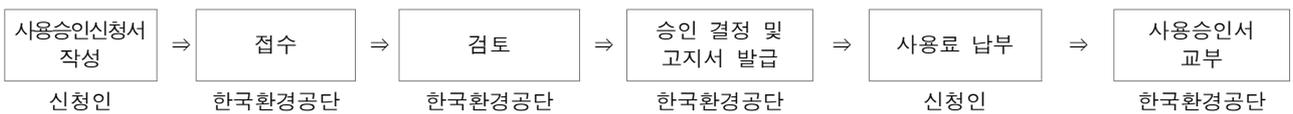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10,000원, 소기업은4,000원) |
|------|----|--|

작성방법

1.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살생물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제 호

사용승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살생물물질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승인 내용

| 승인 시험자료 명칭 | 자료 출처 | | | | |
|---------------|--------|------|------|----|----|
| | 시험수행기관 | 시험일시 | 시험방법 | 용도 | 비고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 신규승인-10개월(의견제출 및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시: 12개월) 2. 재승인- 8개월(의견제출 및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시: 10개월) |
|------|------|---|

| | | |
|---|----------|------------------------------|
| 신청인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
| 구분 | 제조·수입 | <input type="checkbox"/> 제조 | <input type="checkbox"/> 수입 |
| | 신규승인·재승인 | <input type="checkbox"/> 신규승인 | <input type="checkbox"/> 재승인 |

| | | |
|------|----------|---------|
| 신청정보 | 제품명 | 살생물제품유형 |
| | 제형 | 유통기한 |
| | 표준사용량 | 사용방법 |
| | 제조시설 소재지 | |

| | |
|-------------|---------|
| 재승인 신청정보 | 기존 승인번호 |
| | 유효기간 |

| | | | | |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 | | | |

| | | | | | |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 제21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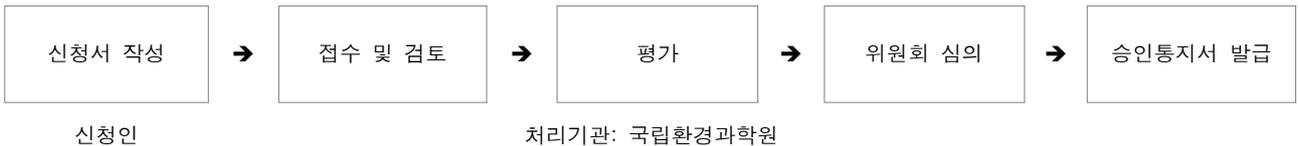
| | | |
|------------------------|---|--|
| <p>첨부서류</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살생물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 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효과·효능 마. 분류·표시 및 포장 바.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 살생물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살생물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다.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바.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p>수수료</p> <p>신규승인: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p> <p>재승인: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p> |
|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뒤쪽)

변경내용

| 연월일 | 내 용 |
|-----|-----|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살생물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살생물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살생물제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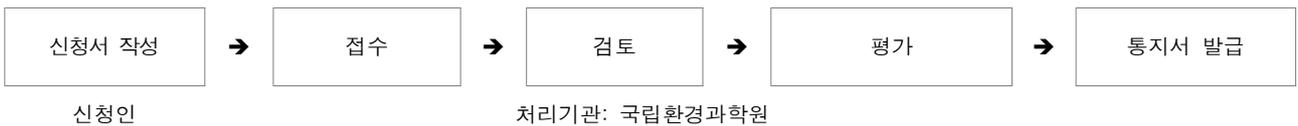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 | |
|-------------------------------------|----------|--------------------------|
| 신청인 (법 제54조의 2에 따라 선 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신청사항 |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 보호기간 연장신청 대상 자료 목록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54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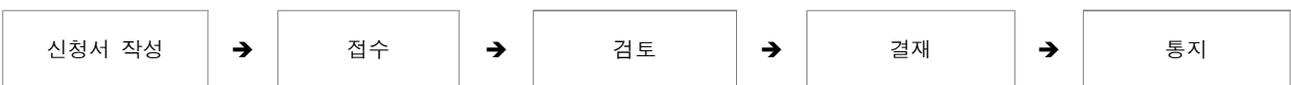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현지평가 필요시 60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구분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 시험·검사업무의 대행 |
|----|---|

| | |
|------|---------------|
| 변경사항 | 명칭 |
| | 대표자 |
| | 소재지(사업장) |
| |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 | 시험·검사분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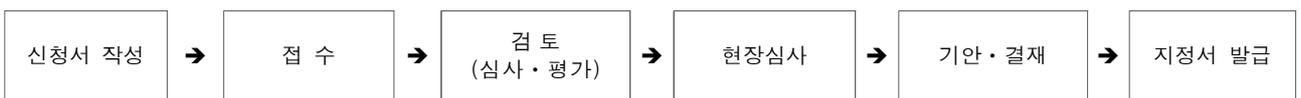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제 호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지정번호 :

3. 대표자 :

4. 소재지 :

5. 시험·검사 분야 :

6. 지정 유효기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변경사항 | |
|------|-----|
| 일자 | 내 용 |
| | |

국외 제조자에 의한 [] 선임 [] 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대상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 | 소재지(법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선임자 (국외 제조자) | 상호(명칭) | 제조국 |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최종수출자 | 상호(명칭) | 수출국 |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살생물제 정보 | 살생물물질 · 제품명 | | |
| |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 | |
| | 살생물제 품유형 | | |
| | 국내 수입자 정보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법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살생물제의 국외 제조자는 수입자를 같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 선임
 있는 자를 [] 해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1. "국내 수입자 정보"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국외 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선임 [] 해임
6. 살생물물질·제품명 :
7. 살생물제품유형 등 :
8. 국외 제조자 :
9. 살생물물질 수입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제의 국외 제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u>제1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용제외를 위한 확인) ①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 제외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10조제6항부터 제8항 또는 법 제3장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u> 2. <u>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u> <p><u>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

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
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5. (생략)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
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
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
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
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

----- 별지 제1호의3서식-----

1. ~ 5. (현행과 같음)

6. -----
사업자등록증명 -----

7. (현행과 같음)

② -----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7일 이
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게 통보-----.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0조제8항 -----

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의 표시건본

<신 설>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
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
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의 표시건본

<신 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
능을 알리려는 경우에 한정하
다)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제8항 -----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
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알
리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

-- 25일 -----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생략)

<신설>

----- 수정 또는
보완에 -----
-----.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인 정보를 변경하는 경

<신 설>

<신 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5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우

2. 수탁자 정보를 변경하는 경

우

3. 제품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기준 해당 물질, 제형 및 용도가 변경되는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품 정보를 말한다)

⑨ 영 제5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4항의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6항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된 기능을 하는 원료물질(이하 주원료라 한다)과 그 배합비율 및 용도를 변경하는 등 각 호의 변경사항이 새로운 승인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제품의 명칭, 제형, 중량·용량·매수 등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경우
3. 주원료를 제외한 원료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신 설>

4. 주원료의 제조원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주원료와 해당 제품의 유해성 및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 등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6. 원료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결과 또는 그 시험·검사의 기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7. 해당 제품의 용법·용량, 폭발·화재·노출 시 응급조치 사항 및 사용 상의 주의사항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8. 해당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 한정된

<신 설>

<신 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

다) 및 연락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단순 오기가 명백하여 정정하는 경우 등 단순한 작성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⑥ 영 제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⑦ -----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

⑧ ----- 영 제6조제4항-----

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 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6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4. (생략)

-----.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통지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 제8항제3호-----

-----.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
 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
 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
 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
 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 ·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의 정보공개) ① 법 제10조
 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
 조제8항에 따라 제품에 표시해
 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
 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법 제47
 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 등에 게
 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

보완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생략)

⑤ ~ ⑨ (생략)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 ④ (생략)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 수
정 또는 보완-- 제2항 및 제3항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 변경승인 신청서-----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④ (생략)

<신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 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물질승인을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 포기의 의사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인 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법 제19

(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④ (생략)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물질승인 신청자료-----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선정일 이후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2항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2항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 승인-----

--.

⑥ (생략)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료

2. (생략)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생략)

<신설>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

-----.

1. -----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호 나목·다목(위해성 정보에 한정한다)·라목의 자료, 같은 조 제7호의 자료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유형이 모두 같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둘 이상의 자에게만 적용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
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 ②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
식의 수정·보완통지서를 신청
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
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 ⑤ (생략)

<신설>

⑪ -----
----- 국
립환경과학원장-----.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
정 또는 보완-----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 특정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
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 유형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효과·효능

<신 설>

<신 설>

<신 설>

3.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공중보건 등 긴급히 필요한 사유

5.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6.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대체하기 위한 제품의 요건에 관한 자료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 요청을 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에 제6항의 긴급히 필요한 사유에 대한 효과·효능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제품이 있다면 사용목적 및 용도 이외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5항의 위해성평가를 위해 해당 제품의 시료, 노출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6항의

<신 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허용하였다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살생물제품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3. 해당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신 설>

⑪ 이 조에 따라 승인 면제를 받은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 ④ (생략)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5조제5항의 신고 증명서, 제6조제8항의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의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보관 시설 기준

가. 제조작업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제품 및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
것

나. 제품의 제조공정 또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시설 또는 기구를 갖추
것

2. 안전관리 등 기준

가. 제품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
것

나.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품제조, 제품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다. 제품의 제조·보관과정에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

3. (생략)

③ (생략)

<신설>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속련도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

-----.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자료 검토

2.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4. (생략)

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생략)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
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
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
----- 신고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 자료 -----

<삭제>

3. 그 밖에 법 제4장에 따른 사
후관리를 위한 조사 등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
리

2.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란 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① -----

----- 환경부장관(승계한 권리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따른 것이면 국립환경과학원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따른 것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
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
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
료
3. 선임된 자가 법 제54조의2제
1항 각 호 및 영 제39조의2제1
항 각 호의 업무를 갈음하여
수행하는 국내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등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자 및 제2항제3호의 국내 수입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 또는 해임된 자 및 제2항제3호의 국내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